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1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김영호·양정숙·김경만

김민철 • 오영환 • 신정훈

윤영찬 · 강민정 · 양경숙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,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이에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 및 제46조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. 다만, 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의2.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제1호 중 "제8 조제1항을"을 "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사체를 훼손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 누	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
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	
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. 다만,
	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
	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
	제외한다.
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	②
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
	<u>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</u>
	<u>위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	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
개정법률	개정법률
제4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46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	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,

1.	제	8조기	네1형	}을	위빈	·하여	동물
	을	죽음	아에	이트	르게	하는	학대
	해.	위릌	항	자			

- 2. (생략)
- ② (생 략)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u><신 설></u>

1. ~ 4. (생 략)

④・⑤ (생 략)

1.	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
	<u>까지를</u>
2.	(현행과 같음)
2	(현행과 같음)
3	
	<u>.</u>
<u>1.</u>	제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
	동물의 사체를 훼손한 자
<u>2.</u>	~ <u>5.</u> (현행 제1호부터 제4
	호까지와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